

중 국

[판례 분석] 음악 녹음제품의 법정허가와 공동침해 판단

2026. 06. 03.

국제협력팀

중국사무소

음악 녹음제품에 대한 법정허가는 타인의 음악저작물이 이미 합법적으로 녹음제품으로 제작된 경우에 한정되며 이미 공연 또는 방송을 통해 공개되었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그것이 법정허가의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님. 한편 음악저작물 저작권 침해에 있어서 가수, 음반 제작자 및 유통사가 각각 분업적으로 타인의 음악저작물을 이용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전체 이용행위의 목적과 이익이 하나로 결합되어 있으면 공동침해 책임이 성립할 수 있음.

1. 현황

중국 음악 산업은 음원 플랫폼과 공연 시장 및 실물 음반 시장이 함께 존재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음. 이와 같은 구조에서는 하나의 음악저작물이 공연 영상, 방송 프로그램, 음반과 온라인 음원으로 반복적으로 이용되는 경우가 많음. 그 결과 원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음악저작물을 녹음하여 음반으로 제작·발행하는 저작권 침해 행위는 여전히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음. 특히 중국 <저작권법> 제42조 제2항은 이미 합법적으로 녹음제품으로 녹음된 음악저작물에 한하여 저작권자의 사전 허락 없이도 규정에 따라 보수를 지급하면 사용할 수 있는 녹음제품 법정허가 제도를 규정하고 있는데 실무에서는 이 조항의 적용 요건에 관한 분쟁이 자주 등장하고 있음. 특히 음반 제작사가 음악저작권집중관리단체인 중국음악저작권협회에 사용료를 납부하였다는 이유로 음악저작물에 대한 법정허가가 적용된다고 주장하거나 그 음악저작물의 공연자가 자신이 녹음제품 제작자가 아님을 이유로 공동침해 책임에서 벗어나려는 시도가 그 대표적인 유형임. 본문에서는 타인의 음악저작물을 무단으로 이용하여 발생한 사례를 통하여 녹음제품 법정허가의 구체적 적용 요건과 음반 제작 과정에 참여한 공연자의 공동 저작권 침해책임에 관한 법적 기준을 살펴봄.

2. 판례소개

사건 번호	1심	(2024)川01民初139号
	2심	(2025)川知民终170号

관할 법원	1심	사천성 청두시 중급인민법원(四川省成都市中级人民法院)		
	2심	사천성 고급인민법원(四川省高级人民法院)		
당사자	A 씨		1심: 피고	2심: 상소인
	B 회사, C 회사		1심: 피고	2심: 상소인
	D 씨		1심: 원고	2심: 피상소인
핵심 쟁점	1심	1. 본 사건이 소멸시효를 경과하였는지 여부 2. D 씨가 본 사건 소송을 제기할 권리가 있는지 여부 3. A 씨와 B 회사 및 C 회사가 D 씨의 저작권을 침해하였는지 여부 4. 침해가 성립하는 경우 A 씨와 B 회사 및 C 회사의 민사책임		
	2심	1. 본 사건이 소멸시효를 경과하였는지 여부 2. D 씨가 자신이 권리를 주장하는 음악저작물의 저작권자인지 여부 3. A 씨와 B 회사 및 C 회사가 D 씨의 저작권을 침해했는지 여부 4. 1심 판결이 확정된 민사책임을 적절한지 여부		
판결 결과	1심	1. 본 사건은 소멸시효를 경과하지 않았음. 2. D 씨는 본 사건 소송을 제기할 권리가 있음. 3. A 씨와 B 회사 및 C 회사는 D 씨의 저작권을 침해하였음. 4. A 씨와 B 회사는 D 씨의 경제적 손실 및 합리적 비용 80만 위안을 배상해야 하며 C 회사는 그 중 70만 위안에 대해 연대 책임을 짐.		
	2심	상소기각, 원심유지		
관계 법령	· 저작권법(著作权法) 제10조 제2호, 제5호, 제6호, 제9호, 제13호, 제11조 제(1)항 및 제(2)항, 제12조 제(1)항, 제42조, 제52조 제11호, 제53조 제1호, 제54조 제(1)항, 제(2)항, 제(3)항 및 제(4)항 · 저작권 민사분쟁사건 심리 법률적용 몇 가지 문제에 관한 최고인민법원의 해석 (最高人民法院关于审理著作权民事纠纷案件适用法律若干问题的解释) 해석 제7조, 제20조			
최종 판결일	2025년 12월 30일			

(1) 사건 개요

D 씨는 “당을 위해 다시 부르는 산가(再唱山歌给党听)”라는 제목을 가진 음악저작물 (이하 ‘사건 음악저작물’이라 함)의 작사·작곡자로서 사건 음악저작물에 대해 저작권 등록을 하였음. 한편 가수

A 씨는 사건 음악저작물을 노래하여 음반(이하 '분쟁 앨범'이라 함)에 수록하였고, B 회사는 음반 출판 업무에 관여하였으며, C 회사는 음반 총판 및 제작·발행 업무에 관여하였음. 분쟁 앨범은 2010년부터 여러 버전으로 제작·발행되었는데 일부 버전의 분쟁 앨범에서 A 씨가 부른 사건 음악저작물(이하 '분쟁 곡'이라 함)의 작사자가 우썩위안(吴兴远), 바츠(巴次)로 표시되고 작곡자가 메이랑뒤지(美朗多吉)로 표시되었음.

D 씨는 자신의 허가 없이 분쟁 곡을 녹음하고 분쟁 앨범을 제작한 행위가 서명권, 공연권, 복제권, 발행권 침해라고 주장하며 A 씨, B 회사 및 C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함.

(2) 핵심 쟁점

본 사건에서 동일한 제목을 가진 서로 다른 두 노래를 둘러싼 저작권 침해 여부가 문제가 되었음. 즉 D 씨가 작사·작곡한 "당을 위해 다시 부르는 산가"라는 곡과 우썩위안, 바츠가 작사하고 메이랑뒤지가 작곡한 "당을 위해 다시 부르는 산가"라는 곡이 존재하는데 그 두 곡은 가사와 멜로디 모두 상이한 서로 다른 곡임. 이때 분쟁 앨범의 가사집에는 "당을 위해 다시 부르는 산가"에 "작사: 우썩위안, 우썩위안, 바츠 및 작곡: 메이랑뒤지"로 표시되어 있었지만 실질적으로 그 노래는 D 씨가 작사·작곡한 "당을 위해 다시 부르는 산가"였음.

이와 같은 상황에서 A 씨와 B 회사 및 C 회사는 사건 음악저작물이 이미 공개되어 있었고, C 회사가 중국음악저작권협회에 녹음 법정허가 사용료 수령·전달 신청을 하고 4,400위안을 지급하였으므로 허락 없는 이용이 아니라고 항변하였음. 또한 A 씨는 단지 가수일 뿐 녹음제품 제작자가 아니므로 복제권, 발행권 침해 책임이 없다고 주장하였음. 이와 같은 사실을 종합해보면 본 사건의 핵심 쟁점은 다음과 같음.

- ① D 씨의 원고적격 여부
- ② A 씨와 B 회사 및 C 회사의 저작권 침해 여부
- ③ 침해가 성립하는 경우 A 씨와 B 회사 및 C 회사의 법적 책임

(3) 법원의 판단

1) 권리 귀속과 저작권자 인정

① 1심 법원의 판단

사건 음악저작물의 권리 귀속에 관해 중국음악저작권협회가 발행한 음악저작권 등록증과 국가 판권국 저작권 등록증에 사건 음악저작물의 작사·작곡자 및 저작권자가 D 씨로 기재되어 있는 점, 2007년 이후 CCTV를 비롯한 여러 매체에서 방송된 D 씨의 공연 영상 및 2011년 출판된 "당을 위해 다시 부르는 산가: 중국공산당 창립 90주년 우수가곡집(再唱山歌给党听: 中国共产党成立90周年优秀歌曲集)"에도 사건 음악저작물의 작사·작곡자가 D 씨로 표시되어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D 씨를 사건 음악저작물의 저작권자로 인정할 수 있음. 한편 친필 원고에 표시된 D 씨의 이름이 본인의 친필이 아니고 타인이 대신 쓴 것이라는 사정이 있었으나 그 원고는 여전히 D 씨 명의로 작성된 자료이고 다른 증거들과 결합되어 권리 귀속을 증명할 수 있으므로, 단지

해당 원고의 D 씨 이름이 D 씨의 친필이 아니라는 사실만으로 권리 귀속이 부정되지 않음.

② 2심 법원의 판단

권리 귀속의 핵심은 단일한 등록증의 절대적 증명력이 아니라 여러 증거가 완전하고 연속적이며 상호 보강되는 증거 체계를 형성하는지 여부임. 우선 저작권 등록증은 신청인의 일방적 신고에 기초한 자료이지만 반대 증거가 없으면 1차적 증명력을 가짐. 또한 D 씨가 제출한 친필 원고는 창작 과정의 진정성을 보여주는 자료이고, 그 서명이 친필이 아니라 하더라도 대필자가 D 씨 명의를 기재한 이상 그 내용 전체를 배척할 수 없음. 따라서 저작권 등록증, 음악저작권 등록증, 관련 원고 및 방송 웹페이지 등의 자료가 함께 작용하여 다원적이고 입체적인 증거 체계를 이루므로 민사소송의 고도개연성 기준을 충족함.

3) 법정허가 항변과 저작권 침해

① 법정허가 성립 여부

중국 저작권법상 녹음제작자가 이미 합법적으로 녹음제품으로 제작된 음악저작물을 다시 녹음 제품으로 제작하는 경우에는 일정한 요건 아래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사용할 수 있으나 보수를 지급해야 함. 그러나 이러한 법정허가가 단순히 타인의 음악저작물이 공개 공연되거나 방송되는 경우에도 적용되는 제도가 아니라, 이미 합법적으로 녹음제품으로 제작된 음악저작물을 다시 녹음 제품으로 제작하는 경우에 한정된다고 해석해야 함. 본 사건에서 사건 음악저작물이 공연 및 방송을 통해 공개되었다는 자료는 있었으나, 그것이 이미 합법적으로 녹음제품으로 제작되었다는 증거가 없었으므로 법정허가의 전제가 충족되지 않음.

또한 중국음악저작권협회에 사용 신청하여 4,400위안을 지급하였기 때문에 사건 음악저작물에 대한 허락을 받았으며 이로 인해 저작권 침해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하는 C 회사의 주장에 대해서 C 회사의 신청서와 사용 음악저작물 명세표에 기재된 곡이 D 씨가 작사·작곡한 사건 음악저작물이 아니라 우썩위안, 바츠가 작사하고 메이랑뒤지가 작곡한 “당을 위해 다시 부르는 산가”이며 이 두 곡은 동명의 서로 다른 음악저작물이기 때문에 그러한 사실만으로 저작권 침해가 부정되는 것은 아님. 게다가 중국음악저작권협회도 사건 음악저작물은 협회의 관리 작품이 아니며, 협회는 법정허가 사용료 수령·전달 기능만 수행하였을 뿐 해당 음악저작물에 관하여 허락 또는 권한 부여를 한 것이 아니라고 설명하였음. 따라서 동일한 제목의 다른 곡에 관한 사용 신청과 납부가 D 씨의 사건 음악저작물 이용 허락으로 전환될 수 없음.

② 저작권 침해 성립 여부

실질적 동일성 성립 여부에 관해서는 우썩위안, 바츠가 작사하고 메이랑뒤지가 작곡으로 된 “당을 위해 다시 부르는 산가”는 D 씨의 사건 음악저작물과 같은 제목을 가진 다른 별개의 곡임. 그러나 분쟁 앨범에 수록된 A 씨가 부른 분쟁 곡은 우썩위안, 바츠 작사 및 메이랑뒤지 작곡으로 표기되었을 뿐 실제 곡은 D 씨의 사건 음악저작물과 실질적으로 동일함. 이 같은 상황에서 분쟁 앨범의 다수 버전에서 분쟁 곡의 작사자가 우썩위안, 바츠로 표시되고 작곡자가 메이랑뒤

지로 표시되었으므로 D 씨의 서명권이 침해되었음. 또한 분쟁 앨범은 사건 음악저작물과 실질적으로 동일한 분쟁 곡을 CD 등 복제품으로 제작하고 이를 대중에게 판매 또는 제공한 것이므로 사건 음악저작물에 대한 복제권과 발행권 침해가 성립함.

저작권 침해 행위에 관하여 본 사건에서 A 씨가 사건 음악저작물을 노래하고, C 회사가 이를 음반으로 녹음·제작하였으며, B 회사가 분쟁 앨범을 출판·발행한 구조가 하나의 완성된 침해행위 체인을 구성하여 사건 음악저작물의 이용행위를 완성하였음. 따라서 A 씨, B 회사 및 C 회사의 행위는 사건 음악저작물의 서명권, 공연권, 복제권, 발행권을 침해하였음. 다만 촬영권 침해 주장은 사건 음악저작물이 영화 또는 유사한 방식으로 고정된 것이 아니므로 성립하지 않으며 2차적 저작물 작성권에 관해서는 D 씨가 이에 관한 주장을 철회하였음.

4) 공동 불법행위와 민사책임의 범위

공동 불법행위 성립 여부에 관해서 A 씨와 B 회사 및 C 회사가 분업형 공동 불법행위를 구성함. A 씨는 법률상 녹음제품 제작자가 아니라고 주장하였으나 법원은 A 씨가 단순히 공연자로서 우연히 노래한 것에 그치지 않고 C 회사와의 계약에 따라 음반 제작에 참여하고 음반 수익을 일정 비율로 분배받았음. C 회사는 음반 제작 및 총판에 관여하였고, B 회사는 출판·발행 주체로서 권리 출처와 저작자 표시를 합리적으로 심사할 주의의무를 부담하였음. 이와 같은 역할 분담이 사건 음악저작물의 녹음·복제·발행이라는 전체 침해행위를 완성하였고, 각 주체가 그 이익을 공유하였으므로 민법상 공동 불법행위에 따른 연대 책임이 성립함.

손해배상액 산정에 관하여 실제 손실과 침해자의 위법소득 및 통상 사용료가 모두 정확히 산정되기 어려웠고 A 씨와 B 회사 및 C 회사가 침해 관련 장부와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였으므로, 분쟁 앨범의 판매 단가, 당사자의 판매 수량 진술과 사건 음악저작물의 지명도와 가치, 침해 기간 및 권리구제 난이도, 변호사 참여 상황 등을 종합하여 A 씨와 C 회사가 80만 위안을 연대 배상하고 B 회사는 그중 70만 위안 범위에서 연대 책임을 져야 함. 또한 분쟁 앨범이 오랜 기간 여러 버전으로 발행되었고 잘못된 작사·작곡자 표시가 대중에게 전달되어 D 씨의 저작인격권에 불리한 영향을 미쳤으므로, A 씨는 신문에 성명을 게재하여 사과하고 영향을 제거해야 함.

3. 판례분석

본문의 판례는 음악저작물의 권리 귀속 증명 방법과 녹음제품 법정허가의 적용 범위 및 전문 음악인·음반사업자의 공동침해 책임을 보다 명확하게 정리하였음. 이하에서는 저작권과 직접 관련되는 세 가지 사항을 중심으로 이 판례의 의미를 검토함.

1) 음악저작물 권리 귀속에서 저작권 등록증의 증명력

본문의 판례에서 법원이 음악저작물의 권리 귀속을 판단할 때 저작권 등록증 하나만을 맹목적으로 신뢰하지 않으면서도, 그 등록증이 형식 심사에 기초했다는 이유만으로 배척하지도 않았음. 중국 저작권법 실무에서 저작권 등록증은 권리자의 존재를 추정하거나 1차적으로 증명하는 중요

한 자료이지만, 등록기관이 저작물의 독창성과 저작자를 실질적으로 심사하는 것은 아니므로 등록증만으로 모든 권리 귀속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님. 반대로 등록증이 형식심사 자료라는 이유만으로 아무런 증명력이 없다고 보면 저작권자가 과거 창작물에 관하여 권리를 증명하는 것이 지나치게 어려워질 수 있음. 본문의 판례는 이 두 상황을 피하면서 저작권 등록증을 증거 사슬의 일부로 보아 다른 자료들과의 서로 상호 보완되어 권리 귀속사항이 충분히 증명될 수 있는지 판단하였음.

구체적으로 D 씨는 중국음악저작권협회가 발행한 음악저작권 등록증과 국가판권국이 발행한 저작권 등록증을 제출하였는데, 이 두 등록증에는 모두 사건 음악저작물의 작사·작곡자 및 권리가 D 씨로 표시되어 있었음. 또한 D 씨는 사건 음악저작물의 원고, 방송 영상, 악보 사이트 자료와 출판물 자료를 제출하였음. 이때 법원은 원고의 서명이 D 씨 본인의 친필이 아니라 타인이 대신 쓴 것이라는 사정만으로 이를 배척하지 않았음. 그 이유는 그 대필 자체가 다른 사람을 저작자로 표시한 것이 아니라 D 씨의 명의를 기재한 것이고 다른 등록, 방송, 출판 자료와 같은 방향으로 작용하였기 때문임. 결국 법원은 저작물의 권리 귀속을 단일 증거의 형식적 완전성으로 판단한 것이 아니라 창작 시점, 최초 공표 시점, 권리자 표시와 저작물 유통 과정에서의 저작자 표시가 서로 일관되는지 검토하였음.

이러한 판단은 음악저작물의 특성에도 부합함. 음악저작물은 악보 원고만으로 유통되는 것이 아니라 가수의 공연과 방송 프로그램, 음반과 악보집 및 온라인 악보 자료를 통해 계속 전파됨. 이 과정에서 작사자와 작곡자 및 가수 표시가 반복적으로 나타나고 그 표시들이 일관된 방향을 가지면 권리 귀속 판단의 중요한 간접사실이 됨. 본문의 판례에서도 2007년부터 2022년까지 여러 매체에서 D 씨가 작사·작곡자로 표시된 자료들이 존재하였음. 이와 같은 자료들은 각각 독립적으로는 완벽하지 않을 수 있지만 함께 결합하면 사건 음악저작물의 창작자와 권리자를 높은 개연성으로 특정하는 기능을 함.

이 점은 음악저작물 침해 사건에서 피고가 흔히 사용하는 방어 방식에도 일정한 한계를 설정함. A 씨, B 회사 및 C 회사는 등록증이 형식심사라는 점과 원고가 친필이 아니라는 점을 들어 권리 귀속 전체를 부정하려고 하였음. 그러나 법원은 반대 증거가 없는 상태에서 D 씨의 복수 증거가 서로 보강된다면 권리 귀속을 인정할 수 있다고 보았음. 따라서 음악저작물 권리자는 향후 소송에서 등록증뿐 아니라 초기 공연 자료와 방송 자료, 출판물과 악보 사이트 자료, 음반 내부 표기 등을 체계적으로 수집하여 증거 사슬을 구성해야 함. 반대로 이용자는 단순히 권리자의 일부 증거에 형식적 흠이 있다는 점을 지적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음악저작물에 다른 진정한 작사자 또는 작곡자가 존재한다는 반대 증거를 제출해야 함.

2) 녹음제품 법정허가의 한계와 동일 제목 음악저작물의 오인 위험

본문의 판례는 녹음제품 제작에 관한 법정허가의 적용 범위를 엄격하게 확인하였음. 중국 <저작권법> 제42조 제2항은 녹음제작자가 타인이 이미 합법적으로 녹음제품으로 제작한 음악저작물을 다시 녹음제품으로 제작하는 경우, 일정한 요건 아래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함. 이 제도는 합법적으로 이미 음반으로 제작된 음악저작물의 후속 이용을 원활하게

하려는 제도임. 그러나 이 녹음제품의 법정허가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해당 음악저작물이 단순히 공연 혹은 방송되었거나 대중에게 알려진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이미 합법적인 녹음제품으로 제작되었다는 사실이 필요함. 이와 같은 논리에 따라 본문의 판례에서 법원은 사건 음악저작물이 공개 공연과 방송을 통해 알려졌다다는 점은 인정하면서도 합법적인 녹음제품으로 제작되었다는 증거가 없으므로 법정허가 성립의 전제 조건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음.

또한 이 사건은 동일한 제목의 음악저작물이 존재하는 경우 사용자가 어떤 곡에 관하여 허락 또는 사용료 수령·전달 절차를 진행했는지 엄밀하게 확인해야 함을 보여줌. C 회사는 중국음악저작권협회에 “당을 위해 다시 부르는 산가”라는 제목의 곡에 관하여 녹음 법정허가 사용료 수령·전달 신청을 하고 4,400위안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였음. 그러나 신청서에 기재된 곡은 작사가가 우썍위안, 바츠이고 작곡자가_메이랑뒤지인 동명의 다른 곡이었음. 실제 분쟁 앨범에 수록된 분쟁 곡은 D 씨가 작사·작곡한 사건 음악저작물과 실질적으로 동일한 곡이었음. 따라서 제목이 같다는 사정만으로 법정허가 절차의 대상 곡과 실제 이용 곡이 동일하다고 볼 수 없음.

법원은 중국음악저작권협회의 역할도 제한적으로 파악하였음. 이 협회는 본 사건에서 분쟁 곡이 자신의 관리 작품이 아니고, 사용자가 신청서에 기재한 작품 정보의 정확성에 관하여 사용자가 책임을 부담해야 하며, 협회는 법정허가 사용료 수령·전달 기능을 수행하였을 뿐 허락 또는 권한 부여를 한 것이 아니라고 회신하였음. 법원은 이 회신을 기초로 통합관리단체에 비용을 지급했다는 사정이 언제나 권리자 허락 취득과 동일한 법적 효과를 가지는 것은 아니라고 보았음. 특히 사용자가 잘못된 곡 정보를 입력하거나 동일한 제목의 다른 곡을 신청한 경우 그 위험은 사용자가 부담해야 함.

3) 가수, 제작사, 유통사의 분업적 공동침해 인정 기준

본문의 판례에서 법원은 음악저작물 침해에서 각 행위자가 담당한 행위가 서로 다르더라도 전체 이용행위의 목적과 이익이 하나로 결합되어 있으면 공동침해 책임이 성립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음. A 씨는 자신이 법률상 녹음제품 제작자가 아니고, 단지 노래를 부른 가수에 불과하므로 복제권과 발행권 침해책임이 없다고 주장하였음. 그러나 법원은 공동침해를 단일 행위자의 형식적 지위가 아니라 행위자들 사이의 역할 분담과 의사 연락 및 이익 공유라는 관점에서 보았음. A 씨가 노래를 부르지 않았다면 분쟁 앨범의 제작이 성립할 수 없고, C 회사는 그 노래를 녹음 제품으로 제작하였으며, B 회사는 출판·발행 업무를 담당하였음. 여기에 A 씨와 C 회사 사이에 음반 수익을 일정 비율로 배분하는 계약관계가 있었으므로, 법원은 세 주체의 행위가 우연히 병존한 것이 아니라 하나의 상업적 이용 목적 아래 결합된 것이라고 보았음.

이와 같은 판단은 저작권 침해의 책임 주체를 실질적으로 파악한 것임. 음반의 제작·유통 과정에서는 가수와 제작사 및 유통사는 각각 다른 역할을 수행하지만 권리자의 관점에서 보면 그 행위들은 하나의 음악저작물을 시장에 유통시키는 일련의 과정임. 만일 가수는 노래만 불렀다는 이유로 책임을 면하고, 제작사는 제공받은 음원을 발행했다는 이유로 책임을 면하며, 유통사는 판매만 했다는 이유로 책임을 면한다면 음악저작권 보호가 지나치게 약화될 수 있음. 따라서 법원은 전문 주체들에게 권리 출처와 저작자 표시를 확인할 높은 주의의무를 부과하고 그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경우 공동침해 책임을 인정하였음.

4. 시사점

본문의 판례는 음악저작물 권리 귀속 증명 과정에서 음악저작권등록증과 저작권 등록증의 역할을 확인하였고, 음악저작물 녹음제품의 법정허가의 전제 조건을 명확히 하였을 뿐만 아니라 음악저작물 저작권 침해에 있어서 가수, 음반 제작자 및 유통사가 각각 분업적으로 타인의 음악저작물을 이용한 경우 그 공동 불법행위 성립 요건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음.

■ 참고자료

판례
(2025)川知民终170号